The GL 오피스텔 분양광고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관련 안내] 국토교통부의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모델하우스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하여 모델하우스 방문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모델하우스 입장시 마스크 미착용 - 열화상 카메라 및 체온계로 체온 측정시 37.5도 이상시
- 기침 및 인후통 등 유증상시 - 체온측정 및 기타 예방절차 불응시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모델하우스 관람, 당첨자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1.06.18.) 기준입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6.17,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경기도 고양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06.17, 광고일과 다름) 현재 경기도 고양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고양시는「주택법」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거주자 우선공급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최대 1개군까지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군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시	2021.06.23(수요일) (08:00 ~17:30)	2021.06.28(월요일) (16:00 이후)	2021.06.29.(화요일) ~ 2021.06.30(수요일) (10:00~16:00)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모델하우스 방문계약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THE GL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94)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경기도 고양시 2021 - 건축디자인과 - 분양신고 - 22호(2021.06.17)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경기도 고양시 2020 - 건축디자인과 - 신축허가 - 56호(2020.12.30)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11, 12BL) 일원

■ 사업시행자 : 시행위탁자 : 글로벌덕은㈜,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 /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 업무대행사 : 지엘덕은도시개발(주) / 시행수탁자 : ㈜하나자산신탁

■ 분양사업자 : ㈜하나자산신탁 / 책임준공 시공자 : 현대건설㈜ / 분양대행사 : 글로벌알앤알㈜

■ 신탁업자(시행수탁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 ㈜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 관리자와의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합니다.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12,568㎡ 중 오피스텔 2,839.35㎡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174,719.47㎡ 중 오피스텔 39,472.47㎡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6층~지하1층(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지상1층(근린생활시설) 지상2층(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지상3층~지상21층(지식산업센터), 지상3층~지상23층(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6층 ~ 지상 23층 3개동 중 오피스텔 총 420호실
- 주차대수 : 총 1,481대 중 오피스텔 420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 : 해당없음 (덕은1유치원, 덕은1초등학교, 덕은1중학교 200m 밖에 위치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은도시개발), 완충녹지(저촉)

■ 내진설계 등급 : VII 0.204g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참조)

지역구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계수(I_E)	내진설계범주	건물 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22- 지진지역1 (유효지반가속도를 고려 0.176 적용)	S_D	1.2 (내진등급 Ⅰ)	D	건물 중요도(1)	- 지식산업센터A,B동 : 6.0 (건물골조시스템-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오피스텔 : 5.0 (내력벽시스템-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본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예정일 : 2024년 05월 예정

■ 입주예정일 : 2024년 06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실, ㎡)

군	타입	공급호실	공급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1군	29A	126	29.9600	17.7600	2.9700	33.0400	83.7300	6.0200
	29B	84	29.7200	17.6200	2.9400	32.7800	83.0600	5.9700
	29C	42	29.7200	17.6200	2.9400	32.7800	83.0600	5.9700
	29D	42	29.9800	17.7700	2.9700	33.0600	83.7800	6.0300
	29E	42	29.1300	17.2700	2.8800	32.1300	81.4100	5.8600
2군	37	42	37.2000	22.0500	3.6800	41.0300	103.9600	7.4800
3군	60	42	60.9400	36.1200	6.0300	67.2100	170.3000	12.2500

※ 상기 표기된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 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차이로 인해 계약면적과 표기된 개별면적의 합산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고양시 덕은동)은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으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20%를 [분양신고일(2021.06.17,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 신청한 자 중 고양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에 포함합니다.

군	타입	공급호실(수)	신청유형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20%)	일반 공급호실	
1군	29A	126	67	269	※ 분양신고일(2021.06.17, 광고일과 다름)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을 통해 각 군별 층, 호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배정함.
	29B	84			
	29C	42			
	29D	42			
	29E	42			
2군	37	42	8	34	
3군	60	42	8	34	

■ 공통사항

• 상기 오피스텔의 공급금액은 타입,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별 최저, 최고금액으로서 호실별 금액은 오피스텔 공급안내문에 표기된 [동호수 배치도 및 동호별 공급금액]을 반드시 모델하우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부동산 거래신고'는 사업주체에서 신고할 예정으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 등도 포함)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됩니다.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전용면적을 가진 단위호실 타입간에도 주동구성에 따라 호실 외벽 두께는 다를 수 있으며, 벽체 공용면적은 전체 벽체공용면적의 합계를 각 호실별 전용면적비로 균등 배분하였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공급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용면적 (관리사무소,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MDF, 방재실, 용역원실, 우편물수취실, 생활폐기물보관함, 복도, 계단, 로비, 경비실, 벽체면적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방재실, 용역원실, MDF실 등은 해당용도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면적(전용면적)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용도별 주차장 면적은 용도별 계획주차대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주차장 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대지지분은 대지공급 당시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별(오피스텔) 분양면적 비율로 균등 배분한 것을 각 호실별 분양면적 비율로 균등하게 계산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공급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금액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관계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금융시장의 변화,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법인계약, 다호실 계약 등]등에 따라 대출조건과 취급 등이 제한[불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계약 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군	타입	층	공급호실		라인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물비	부가가치세	계	1회(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1.11.30	2022.05.30	2022.11.30	2023.05.30	2023.11.30	
1군	29A	3	126	3	09,10,11	171,211,000	184,294,000	18,429,400	373,934,400	37,393,440	37,393,440	37,393,440	37,393,440	37,393,440	37,393,440	149,573,760
		3		1	17	171,143,000	184,220,000	18,422,000	373,785,000	37,378,500	37,378,500	37,378,500	37,378,500	37,378,500	37,378,500	149,514,000
		3		2	18,19	172,821,000	186,026,000	18,602,600	377,449,600	37,744,960	37,744,960	37,744,960	37,744,960	37,744,960	37,744,960	150,979,840
		4		3	09,10,11	172,995,000	186,213,000	18,621,300	377,829,300	37,782,930	37,782,930	37,782,930	37,782,930	37,782,930	37,782,930	151,131,720
		4		3	17,18,19	169,535,000	182,489,000	18,248,900	370,272,900	37,027,290	37,027,290	37,027,290	37,027,290	37,027,290	37,027,290	148,109,160
		5		3	09,10,11	172,995,000	186,213,000	18,621,300	377,829,300	37,782,930	37,782,930	37,782,930	37,782,930	37,782,930	37,782,930	151,131,720
		5		3	17,18,19	169,535,000	182,489,000	18,248,900	370,272,900	37,027,290	37,027,290	37,027,290	37,027,290	37,027,290	37,027,290	148,109,160
		6		3	09,10,11	174,778,000	188,134,000	18,813,400	381,725,400	38,172,540	38,172,540	38,172,540	38,172,540	38,172,540	38,172,540	152,690,160
		6		3	17,18,19	171,282,000	184,371,000	18,437,100	374,090,100	37,409,010	37,409,010	37,409,010	37,409,010	37,409,010	37,409,010	149,636,040
		7		3	09,10,11	174,778,000	188,134,000	18,813,400	381,725,400	38,172,540	38,172,540	38,172,540	38,172,540	38,172,540	38,172,540	152,690,160
		7		3	17,18,19	171,282,000	184,371,000	18,437,100	374,090,100	37,409,010	37,409,010	37,409,010	37,409,010	37,409,010	37,409,010	149,636,040
		8		3	09,10,11	176,562,000	190,053,000	19,005,300	385,620,300	38,562,030	38,562,030	38,562,030	38,562,030	38,562,030	38,562,030	154,248,120
		8		3	17,18,19	173,030,000	186,252,000	18,625,200	377,907,200	37,790,720	37,790,720	37,790,720	37,790,720	37,790,720	37,790,720	151,162,880
		9		3	09,10,11	176,562,000	190,053,000	19,005,300	385,620,300	38,562,030	38,562,030	38,562,030	38,562,030	38,562,030	38,562,030	154,248,120
		9		3	17,18,19	173,030,000	186,252,000	18,625,200	377,907,200	37,790,720	37,790,720	37,790,720	37,790,720	37,790,720	37,790,720	151,162,880
		10		3	09,10,11	178,345,000	191,973,000	19,197,300	389,515,300	38,951,530	38,951,530	38,951,530	38,951,530	38,951,530	38,951,530	155,806,120
		10		3	17,18,19	174,778,000	188,134,000	18,813,400	381,725,400	38,172,540	38,172,540	38,172,540	38,172,540	38,172,540	38,172,540	152,690,160
		11		3	09,10,11	180,129,000	193,892,000	19,389,200	393,410,200	39,341,020	39,341,020	39,341,020	39,341,020	39,341,020	39,341,020	157,364,080
		11		3	17,18,19	176,526,000	190,015,000	19,001,500	385,542,500	38,554,250	38,554,250	38,554,250	38,554,250	38,554,250	38,554,250	154,217,000

		12		3	09,10,11	180,129,000	193,892,000	19,389,200	393,410,200	39,341,020	39,341,020	39,341,020	39,341,020	39,341,020	39,341,020	157,364,080
		12		3	17,18,19	176,526,000	190,015,000	19,001,500	385,542,500	38,554,250	38,554,250	38,554,250	38,554,250	38,554,250	38,554,250	154,217,000
		13		3	09,10,11	180,129,000	193,892,000	19,389,200	393,410,200	39,341,020	39,341,020	39,341,020	39,341,020	39,341,020	39,341,020	157,364,080
		13		3	17,18,19	176,526,000	190,015,000	19,001,500	385,542,500	38,554,250	38,554,250	38,554,250	38,554,250	38,554,250	38,554,250	154,217,000
		14		3	09,10,11	181,912,000	195,812,000	19,581,200	397,305,200	39,730,520	39,730,520	39,730,520	39,730,520	39,730,520	39,730,520	158,922,080
		14		3	17,18,19	178,274,000	191,896,000	19,189,600	389,359,600	38,935,960	38,935,960	38,935,960	38,935,960	38,935,960	38,935,960	155,743,840
		15		3	09,10,11	181,912,000	195,812,000	19,581,200	397,305,200	39,730,520	39,730,520	39,730,520	39,730,520	39,730,520	39,730,520	158,922,080
		15		3	17,18,19	178,274,000	191,896,000	19,189,600	389,359,600	38,935,960	38,935,960	38,935,960	38,935,960	38,935,960	38,935,960	155,743,840
		16		3	09,10,11	181,912,000	195,812,000	19,581,200	397,305,200	39,730,520	39,730,520	39,730,520	39,730,520	39,730,520	39,730,520	158,922,080
		16		3	17,18,19	178,274,000	191,896,000	19,189,600	389,359,600	38,935,960	38,935,960	38,935,960	38,935,960	38,935,960	38,935,960	155,743,840
		17		3	09,10,11	183,695,000	197,732,000	19,773,200	401,200,200	40,120,020	40,120,020	40,120,020	40,120,020	40,120,020	40,120,020	160,480,080
		17		3	17,18,19	180,022,000	193,777,000	19,377,700	393,176,700	39,317,670	39,317,670	39,317,670	39,317,670	39,317,670	39,317,670	157,270,680
		18		3	09,10,11	183,695,000	197,732,000	19,773,200	401,200,200	40,120,020	40,120,020	40,120,020	40,120,020	40,120,020	40,120,020	160,480,080
		18		3	17,18,19	180,022,000	193,777,000	19,377,700	393,176,700	39,317,670	39,317,670	39,317,670	39,317,670	39,317,670	39,317,670	157,270,680
		19		3	09,10,11	183,695,000	197,732,000	19,773,200	401,200,200	40,120,020	40,120,020	40,120,020	40,120,020	40,120,020	40,120,020	160,480,080
		19		3	17,18,19	180,022,000	193,777,000	19,377,700	393,176,700	39,317,670	39,317,670	39,317,670	39,317,670	39,317,670	39,317,670	157,270,680
		20		3	09,10,11	185,479,000	199,652,000	19,965,200	405,096,200	40,509,620	40,509,620	40,509,620	40,509,620	40,509,620	40,509,620	162,038,480
		20		3	17,18,19	181,769,000	195,659,000	19,565,900	396,993,900	39,699,390	39,699,390	39,699,390	39,699,390	39,699,390	39,699,390	158,797,560
		21		3	09,10,11	185,479,000	199,652,000	19,965,200	405,096,200	40,509,620	40,509,620	40,509,620	40,509,620	40,509,620	40,509,620	162,038,480
		21		3	17,18,19	181,769,000	195,659,000	19,565,900	396,993,900	39,699,390	39,699,390	39,699,390	39,699,390	39,699,390	39,699,390	158,797,560
		22		3	09,10,11	185,479,000	199,652,000	19,965,200	405,096,200	40,509,620	40,509,620	40,509,620	40,509,620	40,509,620	40,509,620	162,038,480
		22		3	17,18,19	181,769,000	195,659,000	19,565,900	396,993,900	39,699,390	39,699,390	39,699,390	39,699,390	39,699,390	39,699,390	158,797,560
		23		3	09,10,11	187,262,000	201,572,000	20,157,200	408,991,200	40,899,120	40,899,120	40,899,120	40,899,120	40,899,120	40,899,120	163,596,480
		23		3	17,18,19	183,517,000	197,540,000	19,754,000	400,811,000	40,081,100	40,081,100	40,081,100	40,081,100	40,081,100	40,081,100	160,324,400
	29B	3	84	2	02,03	169,772,000	182,744,000	18,274,400	370,790,400	37,079,040	37,079,040	37,079,040	37,079,040	37,079,040	37,079,040	148,316,160
		3		2	06,07	173,237,000	186,474,000	18,647,400	378,358,400	37,835,840	37,835,840	37,835,840	37,835,840	37,835,840	37,835,840	151,343,360
		4		2	02,03	168,177,000	181,027,000	18,102,700	367,306,700	36,730,670	36,730,670	36,730,670	36,730,670	36,730,670	36,730,670	146,922,680
		4		2	06,07	171,609,000	184,722,000	18,472,200	374,803,200	37,480,320	37,480,320	37,480,320	37,480,320	37,480,320	37,480,320	149,921,280
		5		2	02,03	168,177,000	181,027,000	18,102,700	367,306,700	36,730,670	36,730,670	36,730,670	36,730,670	36,730,670	36,730,670	146,922,680
		5		2	06,07	171,609,000	184,722,000	18,472,200	374,803,200	37,480,320	37,480,320	37,480,320	37,480,320	37,480,320	37,480,320	149,921,280
		6		2	02,03	169,910,000	182,894,000	18,289,400	371,093,400	37,109,340	37,109,340	37,109,340	37,109,340	37,109,340	37,109,340	148,437,360
		6		2	06,07	173,378,000	186,626,000	18,662,600	378,666,600	37,866,660	37,866,660	37,866,660	37,866,660	37,866,660	37,866,660	151,466,640
		7		2	02,03	169,910,000	182,894,000	18,289,400	371,093,400	37,109,340	37,109,340	37,109,340	37,109,340	37,109,340	37,109,340	148,437,360

		7		2	06,07	173,378,000	186,626,000	18,662,600	378,666,600	37,866,660	37,866,660	37,866,660	37,866,660	37,866,660	37,866,660	151,466,640
		8		2	02,03	171,644,000	184,760,000	18,476,000	374,880,000	37,488,000	37,488,000	37,488,000	37,488,000	37,488,000	37,488,000	149,952,000
		8		2	06,07	175,147,000	188,531,000	18,853,100	382,531,100	38,253,110	38,253,110	38,253,110	38,253,110	38,253,110	38,253,110	153,012,440
		9		2	02,03	171,644,000	184,760,000	18,476,000	374,880,000	37,488,000	37,488,000	37,488,000	37,488,000	37,488,000	37,488,000	149,952,000
		9		2	06,07	175,147,000	188,531,000	18,853,100	382,531,100	38,253,110	38,253,110	38,253,110	38,253,110	38,253,110	38,253,110	153,012,440
		10		2	02,03	173,378,000	186,626,000	18,662,600	378,666,600	37,866,660	37,866,660	37,866,660	37,866,660	37,866,660	37,866,660	151,466,640
		10		2	06,07	176,916,000	190,435,000	19,043,500	386,394,500	38,639,450	38,639,450	38,639,450	38,639,450	38,639,450	38,639,450	154,557,800
		11		2	02,03	175,112,000	188,492,000	18,849,200	382,453,200	38,245,320	38,245,320	38,245,320	38,245,320	38,245,320	38,245,320	152,981,280
		11		2	06,07	178,686,000	192,339,000	19,233,900	390,258,900	39,025,890	39,025,890	39,025,890	39,025,890	39,025,890	39,025,890	156,103,560
		12		2	02,03	175,112,000	188,492,000	18,849,200	382,453,200	38,245,320	38,245,320	38,245,320	38,245,320	38,245,320	38,245,320	152,981,280
		12		2	06,07	178,686,000	192,339,000	19,233,900	390,258,900	39,025,890	39,025,890	39,025,890	39,025,890	39,025,890	39,025,890	156,103,560
		13		2	02,03	175,112,000	188,492,000	18,849,200	382,453,200	38,245,320	38,245,320	38,245,320	38,245,320	38,245,320	38,245,320	152,981,280
		13		2	06,07	178,686,000	192,339,000	19,233,900	390,258,900	39,025,890	39,025,890	39,025,890	39,025,890	39,025,890	39,025,890	156,103,560
		14		2	02,03	176,845,000	190,359,000	19,035,900	386,239,900	38,623,990	38,623,990	38,623,990	38,623,990	38,623,990	38,623,990	154,495,960
		14		2	06,07	180,455,000	194,243,000	19,424,300	394,122,300	39,412,230	39,412,230	39,412,230	39,412,230	39,412,230	39,412,230	157,648,920
		15		2	02,03	176,845,000	190,359,000	19,035,900	386,239,900	38,623,990	38,623,990	38,623,990	38,623,990	38,623,990	38,623,990	154,495,960
		15		2	06,07	180,455,000	194,243,000	19,424,300	394,122,300	39,412,230	39,412,230	39,412,230	39,412,230	39,412,230	39,412,230	157,648,920
		16		2	02,03	176,845,000	190,359,000	19,035,900	386,239,900	38,623,990	38,623,990	38,623,990	38,623,990	38,623,990	38,623,990	154,495,960
		16		2	06,07	180,455,000	194,243,000	19,424,300	394,122,300	39,412,230	39,412,230	39,412,230	39,412,230	39,412,230	39,412,230	157,648,920
		17		2	02,03	178,580,000	192,225,000	19,222,500	390,027,500	39,002,750	39,002,750	39,002,750	39,002,750	39,002,750	39,002,750	156,011,000
		17		2	06,07	182,224,000	196,148,000	19,614,800	397,986,800	39,798,680	39,798,680	39,798,680	39,798,680	39,798,680	39,798,680	159,194,720
		18		2	02,03	178,580,000	192,225,000	19,222,500	390,027,500	39,002,750	39,002,750	39,002,750	39,002,750	39,002,750	39,002,750	156,011,000
		18		2	06,07	182,224,000	196,148,000	19,614,800	397,986,800	39,798,680	39,798,680	39,798,680	39,798,680	39,798,680	39,798,680	159,194,720
		19		2	02,03	178,580,000	192,225,000	19,222,500	390,027,500	39,002,750	39,002,750	39,002,750	39,002,750	39,002,750	39,002,750	156,011,000
		19		2	06,07	182,224,000	196,148,000	19,614,800	397,986,800	39,798,680	39,798,680	39,798,680	39,798,680	39,798,680	39,798,680	159,194,720
		20		2	02,03	180,313,000	194,092,000	19,409,200	393,814,200	39,381,420	39,381,420	39,381,420	39,381,420	39,381,420	39,381,420	157,525,680
		20		2	06,07	183,993,000	198,053,000	19,805,300	401,851,300	40,185,130	40,185,130	40,185,130	40,185,130	40,185,130	40,185,130	160,740,520
		21		2	02,03	180,313,000	194,092,000	19,409,200	393,814,200	39,381,420	39,381,420	39,381,420	39,381,420	39,381,420	39,381,420	157,525,680
		21		2	06,07	183,993,000	198,053,000	19,805,300	401,851,300	40,185,130	40,185,130	40,185,130	40,185,130	40,185,130	40,185,130	160,740,520
		22		2	02,03	180,313,000	194,092,000	19,409,200	393,814,200	39,381,420	39,381,420	39,381,420	39,381,420	39,381,420	39,381,420	157,525,680
		22		2	06,07	183,993,000	198,053,000	19,805,300	401,851,300	40,185,130	40,185,130	40,185,130	40,185,130	40,185,130	40,185,130	160,740,520
		23		2	02,03	182,047,000	195,958,000	19,595,800	397,600,800	39,760,080	39,760,080	39,760,080	39,760,080	39,760,080	39,760,080	159,040,320
		23		2	06,07	185,762,000	199,957,000	19,995,700	405,714,700	40,571,470	40,571,470	40,571,470	40,571,470	40,571,470	40,571,470	162,285,880

		3		2	14,15	140,967,000	151,739,000	15,173,900	307,879,900	30,787,990	30,787,990	30,787,990	30,787,990	30,787,990	30,787,990	123,151,960
		4		2	14,15	142,436,000	153,319,000	15,331,900	311,086,900	31,108,690	31,108,690	31,108,690	31,108,690	31,108,690	31,108,690	124,434,760
		5		2	14,15	142,436,000	153,319,000	15,331,900	311,086,900	31,108,690	31,108,690	31,108,690	31,108,690	31,108,690	31,108,690	124,434,760
		6		2	14,15	143,904,000	154,900,000	15,490,000	314,294,000	31,429,400	31,429,400	31,429,400	31,429,400	31,429,400	31,429,400	125,717,600
		7		2	14,15	143,904,000	154,900,000	15,490,000	314,294,000	31,429,400	31,429,400	31,429,400	31,429,400	31,429,400	31,429,400	125,717,600
		8		2	14,15	145,372,000	156,481,000	15,648,100	317,501,100	31,750,110	31,750,110	31,750,110	31,750,110	31,750,110	31,750,110	127,000,440
		9		2	14,15	145,372,000	156,481,000	15,648,100	317,501,100	31,750,110	31,750,110	31,750,110	31,750,110	31,750,110	31,750,110	127,000,440
		10		2	14,15	146,841,000	158,061,000	15,806,100	320,708,100	32,070,810	32,070,810	32,070,810	32,070,810	32,070,810	32,070,810	128,283,240
		11		2	14,15	148,309,000	159,642,000	15,964,200	323,915,200	32,391,520	32,391,520	32,391,520	32,391,520	32,391,520	32,391,520	129,566,080
		12		2	14,15	148,309,000	159,642,000	15,964,200	323,915,200	32,391,520	32,391,520	32,391,520	32,391,520	32,391,520	32,391,520	129,566,080
	29C	13	42	2	14,15	148,309,000	159,642,000	15,964,200	323,915,200	32,391,520	32,391,520	32,391,520	32,391,520	32,391,520	32,391,520	129,566,080
		14		2	14,15	149,778,000	161,222,000	16,122,200	327,122,200	32,712,220	32,712,220	32,712,220	32,712,220	32,712,220	32,712,220	130,848,880
		15		2	14,15	149,778,000	161,222,000	16,122,200	327,122,200	32,712,220	32,712,220	32,712,220	32,712,220	32,712,220	32,712,220	130,848,880
		16		2	14,15	149,778,000	161,222,000	16,122,200	327,122,200	32,712,220	32,712,220	32,712,220	32,712,220	32,712,220	32,712,220	130,848,880
		17		2	14,15	151,246,000	162,803,000	16,280,300	330,329,300	33,032,930	33,032,930	33,032,930	33,032,930	33,032,930	33,032,930	132,131,720
		18		2	14,15	151,246,000	162,803,000	16,280,300	330,329,300	33,032,930	33,032,930	33,032,930	33,032,930	33,032,930	33,032,930	132,131,720
		19		2	14,15	151,246,000	162,803,000	16,280,300	330,329,300	33,032,930	33,032,930	33,032,930	33,032,930	33,032,930	33,032,930	132,131,720
		20		2	14,15	152,714,000	164,384,000	16,438,400	333,536,400	33,353,640	33,353,640	33,353,640	33,353,640	33,353,640	33,353,640	133,414,560
		21		2	14,15	152,714,000	164,384,000	16,438,400	333,536,400	33,353,640	33,353,640	33,353,640	33,353,640	33,353,640	33,353,640	133,414,560
		22		2	14,15	152,714,000	164,384,000	16,438,400	333,536,400	33,353,640	33,353,640	33,353,640	33,353,640	33,353,640	33,353,640	133,414,560
		23		2	14,15	154,183,000	165,964,000	16,596,400	336,743,400	33,674,340	33,674,340	33,674,340	33,674,340	33,674,340	33,674,340	134,697,360
		3		2	13,16	142,200,000	153,066,000	15,306,600	310,572,600	31,057,260	31,057,260	31,057,260	31,057,260	31,057,260	31,057,260	124,229,040
		4		2	13,16	143,682,000	154,660,000	15,466,000	313,808,000	31,380,800	31,380,800	31,380,800	31,380,800	31,380,800	31,380,800	125,523,200
		5		2	13,16	143,682,000	154,660,000	15,466,000	313,808,000	31,380,800	31,380,800	31,380,800	31,380,800	31,380,800	31,380,800	125,523,200
		6		2	13,16	145,163,000	156,255,000	15,625,500	317,043,500	31,704,350	31,704,350	31,704,350	31,704,350	31,704,350	31,704,350	126,817,400
		7		2	13,16	145,163,000	156,255,000	15,625,500	317,043,500	31,704,350	31,704,350	31,704,350	31,704,350	31,704,350	31,704,350	126,817,400
		8		2	13,16	146,644,000	157,849,000	15,784,900	320,277,900	32,027,790	32,027,790	32,027,790	32,027,790	32,027,790	32,027,790	128,111,160
	29D	9	42	2	13,16	146,644,000	157,849,000	15,784,900	320,277,900	32,027,790	32,027,790	32,027,790	32,027,790	32,027,790	32,027,790	128,111,160
		10		2	13,16	148,125,000	159,444,000	15,944,400	323,513,400	32,351,340	32,351,340	32,351,340	32,351,340	32,351,340	32,351,340	129,405,360
		11		2	13,16	149,607,000	161,038,000	16,103,800	326,748,800	32,674,880	32,674,880	32,674,880	32,674,880	32,674,880	32,674,880	130,699,520
		12		2	13,16	149,607,000	161,038,000	16,103,800	326,748,800	32,674,880	32,674,880	32,674,880	32,674,880	32,674,880	32,674,880	130,699,520
		13		2	13,16	149,607,000	161,038,000	16,103,800	326,748,800	32,674,880	32,674,880	32,674,880	32,674,880	32,674,880	32,674,880	130,699,520
		14		2	13,16	151,088,000	162,632,000	16,263,200	329,983,200	32,998,320	32,998,320	32,998,320	32,998,320	32,998,320	32,998,320	131,993,280

		15		2	13,16	151,088,000	162,632,000	16,263,200	329,983,200	32,998,320	32,998,320	32,998,320	32,998,320	32,998,320	32,998,320	131,993,280
		16		2	13,16	151,088,000	162,632,000	16,263,200	329,983,200	32,998,320	32,998,320	32,998,320	32,998,320	32,998,320	32,998,320	131,993,280
		17		2	13,16	152,569,000	164,227,000	16,422,700	333,218,700	33,321,870	33,321,870	33,321,870	33,321,870	33,321,870	33,321,870	133,287,480
		18		2	13,16	152,569,000	164,227,000	16,422,700	333,218,700	33,321,870	33,321,870	33,321,870	33,321,870	33,321,870	33,321,870	133,287,480
		19		2	13,16	152,569,000	164,227,000	16,422,700	333,218,700	33,321,870	33,321,870	33,321,870	33,321,870	33,321,870	33,321,870	133,287,480
		20		2	13,16	154,050,000	165,822,000	16,582,200	336,454,200	33,645,420	33,645,420	33,645,420	33,645,420	33,645,420	33,645,420	134,581,680
		21		2	13,16	154,050,000	165,822,000	16,582,200	336,454,200	33,645,420	33,645,420	33,645,420	33,645,420	33,645,420	33,645,420	134,581,680
		22		2	13,16	154,050,000	165,822,000	16,582,200	336,454,200	33,645,420	33,645,420	33,645,420	33,645,420	33,645,420	33,645,420	134,581,680
		23		2	13,16	155,531,000	167,416,000	16,741,600	339,688,600	33,968,860	33,968,860	33,968,860	33,968,860	33,968,860	33,968,860	135,875,440
	29E	3	42	1	04	166,401,000	179,117,000	17,911,700	363,429,700	36,342,970	36,342,970	36,342,970	36,342,970	36,342,970	36,342,970	145,371,880
		3		1	08	169,798,000	182,772,000	18,277,200	370,847,200	37,084,720	37,084,720	37,084,720	37,084,720	37,084,720	37,084,720	148,338,880
		4		1	04	164,838,000	177,434,000	17,743,400	360,015,400	36,001,540	36,001,540	36,001,540	36,001,540	36,001,540	36,001,540	144,006,160
		4		1	08	168,202,000	181,055,000	18,105,500	367,362,500	36,736,250	36,736,250	36,736,250	36,736,250	36,736,250	36,736,250	146,945,000
		5		1	04	164,838,000	177,434,000	17,743,400	360,015,400	36,001,540	36,001,540	36,001,540	36,001,540	36,001,540	36,001,540	144,006,160
		5		1	08	168,202,000	181,055,000	18,105,500	367,362,500	36,736,250	36,736,250	36,736,250	36,736,250	36,736,250	36,736,250	146,945,000
		6		1	04	166,537,000	179,263,000	17,926,300	363,726,300	36,372,630	36,372,630	36,372,630	36,372,630	36,372,630	36,372,630	145,490,520
		6		1	08	169,936,000	182,922,000	18,292,200	371,150,200	37,115,020	37,115,020	37,115,020	37,115,020	37,115,020	37,115,020	148,460,080
		7		1	04	166,537,000	179,263,000	17,926,300	363,726,300	36,372,630	36,372,630	36,372,630	36,372,630	36,372,630	36,372,630	145,490,520
		7		1	08	169,936,000	182,922,000	18,292,200	371,150,200	37,115,020	37,115,020	37,115,020	37,115,020	37,115,020	37,115,020	148,460,080
		8		1	04	168,237,000	181,092,000	18,109,200	367,438,200	36,743,820	36,743,820	36,743,820	36,743,820	36,743,820	36,743,820	146,975,280
		8		1	08	171,670,000	184,788,000	18,478,800	374,936,800	37,493,680	37,493,680	37,493,680	37,493,680	37,493,680	37,493,680	149,974,720
		9		1	04	168,237,000	181,092,000	18,109,200	367,438,200	36,743,820	36,743,820	36,743,820	36,743,820	36,743,820	36,743,820	146,975,280
		9		1	08	171,670,000	184,788,000	18,478,800	374,936,800	37,493,680	37,493,680	37,493,680	37,493,680	37,493,680	37,493,680	149,974,720
		10		1	04	169,936,000	182,922,000	18,292,200	371,150,200	37,115,020	37,115,020	37,115,020	37,115,020	37,115,020	37,115,020	148,460,080
		10		1	08	173,404,000	186,655,000	18,665,500	378,724,500	37,872,450	37,872,450	37,872,450	37,872,450	37,872,450	37,872,450	151,489,800
		11		1	04	171,635,000	184,751,000	18,475,100	374,861,100	37,486,110	37,486,110	37,486,110	37,486,110	37,486,110	37,486,110	149,944,440
		11		1	08	175,138,000	188,521,000	18,852,100	382,511,100	38,251,110	38,251,110	38,251,110	38,251,110	38,251,110	38,251,110	153,004,440
		12		1	04	171,635,000	184,751,000	18,475,100	374,861,100	37,486,110	37,486,110	37,486,110	37,486,110	37,486,110	37,486,110	149,944,440
		12		1	08	175,138,000	188,521,000	18,852,100	382,511,100	38,251,110	38,251,110	38,251,110	38,251,110	38,251,110	38,251,110	153,004,440
		13		1	04	171,635,000	184,751,000	18,475,100	374,861,100	37,486,110	37,486,110	37,486,110	37,486,110	37,486,110	37,486,110	149,944,440
		13		1	08	175,138,000	188,521,000	18,852,100	382,511,100	38,251,110	38,251,110	38,251,110	38,251,110	38,251,110	38,251,110	153,004,440
		14		1	04	173,335,000	186,580,000	18,658,000	378,573,0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151,429,200

		14		1	08	176,872,000	190,388,000	19,038,800	386,298,800	38,629,880	38,629,880	38,629,880	38,629,880	38,629,880	38,629,880	154,519,520
		15		1	04	173,335,000	186,580,000	18,658,000	378,573,0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151,429,200
		15		1	08	176,872,000	190,388,000	19,038,800	386,298,800	38,629,880	38,629,880	38,629,880	38,629,880	38,629,880	38,629,880	154,519,520
		16		1	04	173,335,000	186,580,000	18,658,000	378,573,0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37,857,300	151,429,200
		16		1	08	176,872,000	190,388,000	19,038,800	386,298,800	38,629,880	38,629,880	38,629,880	38,629,880	38,629,880	38,629,880	154,519,520
		17		1	04	175,034,000	188,409,000	18,840,900	382,283,900	38,228,390	38,228,390	38,228,390	38,228,390	38,228,390	38,228,390	152,913,560
		17		1	08	178,607,000	192,254,000	19,225,400	390,086,400	39,008,640	39,008,640	39,008,640	39,008,640	39,008,640	39,008,640	156,034,560
		18		1	04	175,034,000	188,409,000	18,840,900	382,283,900	38,228,390	38,228,390	38,228,390	38,228,390	38,228,390	38,228,390	152,913,560
		18		1	08	178,607,000	192,254,000	19,225,400	390,086,400	39,008,640	39,008,640	39,008,640	39,008,640	39,008,640	39,008,640	156,034,560
		19		1	04	175,034,000	188,409,000	18,840,900	382,283,900	38,228,390	38,228,390	38,228,390	38,228,390	38,228,390	38,228,390	152,913,560
		19		1	08	178,607,000	192,254,000	19,225,400	390,086,400	39,008,640	39,008,640	39,008,640	39,008,640	39,008,640	39,008,640	156,034,560
		20		1	04	176,734,000	190,238,000	19,023,800	385,995,800	38,599,580	38,599,580	38,599,580	38,599,580	38,599,580	38,599,580	154,398,320
		20		1	08	180,340,000	194,121,000	19,412,100	393,873,100	39,387,310	39,387,310	39,387,310	39,387,310	39,387,310	39,387,310	157,549,240
		21		1	04	176,734,000	190,238,000	19,023,800	385,995,800	38,599,580	38,599,580	38,599,580	38,599,580	38,599,580	38,599,580	154,398,320
		21		1	08	180,340,000	194,121,000	19,412,100	393,873,100	39,387,310	39,387,310	39,387,310	39,387,310	39,387,310	39,387,310	157,549,240
		22		1	04	176,734,000	190,238,000	19,023,800	385,995,800	38,599,580	38,599,580	38,599,580	38,599,580	38,599,580	38,599,580	154,398,320
		22		1	08	180,340,000	194,121,000	19,412,100	393,873,100	39,387,310	39,387,310	39,387,310	39,387,310	39,387,310	39,387,310	157,549,240
		23		1	04	178,433,000	192,067,000	19,206,700	389,706,700	38,970,670	38,970,670	38,970,670	38,970,670	38,970,670	38,970,670	155,882,680
		23		1	08	182,075,000	195,987,000	19,598,700	397,660,700	39,766,070	39,766,070	39,766,070	39,766,070	39,766,070	39,766,070	159,064,280
2군	37	3	42	1	12	212,585,000	228,830,000	22,883,000	464,298,000	46,429,800	46,429,800	46,429,800	46,429,800	46,429,800	46,429,800	185,719,200
		3		1	20	212,501,000	228,738,000	22,873,800	464,112,800	46,411,280	46,411,280	46,411,280	46,411,280	46,411,280	46,411,280	185,645,120
		4		1	12	214,800,000	231,213,000	23,121,300	469,134,300	46,913,430	46,913,430	46,913,430	46,913,430	46,913,430	46,913,430	187,653,720
		4		1	20	210,504,000	226,589,000	22,658,900	459,751,900	45,975,190	45,975,190	45,975,190	45,975,190	45,975,190	45,975,190	183,900,760
		5		1	12	214,800,000	231,213,000	23,121,300	469,134,300	46,913,430	46,913,430	46,913,430	46,913,430	46,913,430	46,913,430	187,653,720
		5		1	20	210,504,000	226,589,000	22,658,900	459,751,900	45,975,190	45,975,190	45,975,190	45,975,190	45,975,190	45,975,190	183,900,760
		6		1	12	217,014,000	233,597,000	23,359,700	473,970,700	47,397,070	47,397,070	47,397,070	47,397,070	47,397,070	47,397,070	189,588,280
		6		1	20	212,674,000	228,925,000	22,892,500	464,491,500	46,449,150	46,449,150	46,449,150	46,449,150	46,449,150	46,449,150	185,796,600
		7		1	12	217,014,000	233,597,000	23,359,700	473,970,700	47,397,070	47,397,070	47,397,070	47,397,070	47,397,070	47,397,070	189,588,280
		7		1	20	212,674,000	228,925,000	22,892,500	464,491,500	46,449,150	46,449,150	46,449,150	46,449,150	46,449,150	46,449,150	185,796,600
		8		1	12	219,229,000	235,980,000	23,598,000	478,807,000	47,880,700	47,880,700	47,880,700	47,880,700	47,880,700	47,880,700	191,522,800
		8		1	20	214,844,000	231,261,000	23,126,100	469,231,100	46,923,110	46,923,110	46,923,110	46,923,110	46,923,110	46,923,110	187,692,440
		9		1	12	219,229,000	235,980,000	23,598,000	478,807,000	47,880,700	47,880,700	47,880,700	47,880,700	47,880,700	47,880,700	191,522,800
		9		1	20	214,844,000	231,261,000	23,126,100	469,231,100	46,923,110	46,923,110	46,923,110	46,923,110	46,923,110	46,923,110	187,692,440

		10		1	12	221,443,000	238,364,000	23,836,400	483,643,400	48,364,340	48,364,340	48,364,340	48,364,340	48,364,340	48,364,340	193,457,360
		10		1	20	217,014,000	233,597,000	23,359,700	473,970,700	47,397,070	47,397,070	47,397,070	47,397,070	47,397,070	47,397,070	189,588,280
		11		1	12	223,658,000	240,748,000	24,074,800	488,480,800	48,848,080	48,848,080	48,848,080	48,848,080	48,848,080	48,848,080	195,392,320
		11		1	20	219,184,000	235,933,000	23,593,300	478,710,300	47,871,030	47,871,030	47,871,030	47,871,030	47,871,030	47,871,030	191,484,120
		12		1	12	223,658,000	240,748,000	24,074,800	488,480,800	48,848,080	48,848,080	48,848,080	48,848,080	48,848,080	48,848,080	195,392,320
		12		1	20	219,184,000	235,933,000	23,593,300	478,710,300	47,871,030	47,871,030	47,871,030	47,871,030	47,871,030	47,871,030	191,484,120
		13		1	12	223,658,000	240,748,000	24,074,800	488,480,800	48,848,080	48,848,080	48,848,080	48,848,080	48,848,080	48,848,080	195,392,320
		13		1	20	219,184,000	235,933,000	23,593,300	478,710,300	47,871,030	47,871,030	47,871,030	47,871,030	47,871,030	47,871,030	191,484,120
		14		1	12	225,872,000	243,132,000	24,313,200	493,317,200	49,331,720	49,331,720	49,331,720	49,331,720	49,331,720	49,331,720	197,326,880
		14		1	20	221,355,000	238,269,000	23,826,900	483,450,900	48,345,090	48,345,090	48,345,090	48,345,090	48,345,090	48,345,090	193,380,360
		15		1	12	225,872,000	243,132,000	24,313,200	493,317,200	49,331,720	49,331,720	49,331,720	49,331,720	49,331,720	49,331,720	197,326,880
		15		1	20	221,355,000	238,269,000	23,826,900	483,450,900	48,345,090	48,345,090	48,345,090	48,345,090	48,345,090	48,345,090	193,380,360
		16		1	12	225,872,000	243,132,000	24,313,200	493,317,200	49,331,720	49,331,720	49,331,720	49,331,720	49,331,720	49,331,720	197,326,880
		16		1	20	221,355,000	238,269,000	23,826,900	483,450,900	48,345,090	48,345,090	48,345,090	48,345,090	48,345,090	48,345,090	193,380,360
		17		1	12	228,087,000	245,515,000	24,551,500	498,153,500	49,815,350	49,815,350	49,815,350	49,815,350	49,815,350	49,815,350	199,261,400
		17		1	20	223,525,000	240,605,000	24,060,500	488,190,500	48,819,050	48,819,050	48,819,050	48,819,050	48,819,050	48,819,050	195,276,200
		18		1	12	228,087,000	245,515,000	24,551,500	498,153,500	49,815,350	49,815,350	49,815,350	49,815,350	49,815,350	49,815,350	199,261,400
		18		1	20	223,525,000	240,605,000	24,060,500	488,190,500	48,819,050	48,819,050	48,819,050	48,819,050	48,819,050	48,819,050	195,276,200
		19		1	12	228,087,000	245,515,000	24,551,500	498,153,500	49,815,350	49,815,350	49,815,350	49,815,350	49,815,350	49,815,350	199,261,400
		19		1	20	223,525,000	240,605,000	24,060,500	488,190,500	48,819,050	48,819,050	48,819,050	48,819,050	48,819,050	48,819,050	195,276,200
		20		1	12	230,301,000	247,899,000	24,789,900	502,989,900	50,298,990	50,298,990	50,298,990	50,298,990	50,298,990	50,298,990	201,195,960
		20		1	20	225,695,000	242,941,000	24,294,100	492,930,100	49,293,010	49,293,010	49,293,010	49,293,010	49,293,010	49,293,010	197,172,040
		21		1	12	230,301,000	247,899,000	24,789,900	502,989,900	50,298,990	50,298,990	50,298,990	50,298,990	50,298,990	50,298,990	201,195,960
		21		1	20	225,695,000	242,941,000	24,294,100	492,930,100	49,293,010	49,293,010	49,293,010	49,293,010	49,293,010	49,293,010	197,172,040
		22		1	12	230,301,000	247,899,000	24,789,900	502,989,900	50,298,990	50,298,990	50,298,990	50,298,990	50,298,990	50,298,990	201,195,960
		22		1	20	225,695,000	242,941,000	24,294,100	492,930,100	49,293,010	49,293,010	49,293,010	49,293,010	49,293,010	49,293,010	197,172,040
		23		1	12	232,516,000	250,282,000	25,028,200	507,826,200	50,782,620	50,782,620	50,782,620	50,782,620	50,782,620	50,782,620	203,130,480
		23		1	20	227,865,000	245,277,000	24,527,700	497,669,700	49,766,970	49,766,970	49,766,970	49,766,970	49,766,970	49,766,970	199,067,880
3군	60	3	42	2	01,05	358,700,000	386,108,000	38,610,800	783,418,800	78,341,880	78,341,880	78,341,880	78,341,880	78,341,880	78,341,880	313,367,520
		4		2	01,05	362,436,000	390,130,000	39,013,000	791,579,000	79,157,900	79,157,900	79,157,900	79,157,900	79,157,900	79,157,900	316,631,600
		5		2	01,05	362,436,000	390,130,000	39,013,000	791,579,000	79,157,900	79,157,900	79,157,900	79,157,900	79,157,900	79,157,900	316,631,600
		6		2	01,05	366,172,000	394,152,000	39,415,200	799,739,200	79,973,920	79,973,920	79,973,920	79,973,920	79,973,920	79,973,920	319,895,680

		7		2	01,05	366,172,000	394,152,000	39,415,200	799,739,200	79,973,920	79,973,920	79,973,920	79,973,920	79,973,920	79,973,920	319,895,680
		8		2	01,05	369,909,000	398,174,000	39,817,400	807,900,400	80,790,040	80,790,040	80,790,040	80,790,040	80,790,040	80,790,040	323,160,160
		9		2	01,05	369,909,000	398,174,000	39,817,400	807,900,400	80,790,040	80,790,040	80,790,040	80,790,040	80,790,040	80,790,040	323,160,160
		10		2	01,05	373,645,000	402,196,000	40,219,600	816,060,600	81,606,060	81,606,060	81,606,060	81,606,060	81,606,060	81,606,060	326,424,240
		11		2	01,05	377,382,000	406,218,000	40,621,800	824,221,800	82,422,180	82,422,180	82,422,180	82,422,180	82,422,180	82,422,180	329,688,720
		12		2	01,05	377,382,000	406,218,000	40,621,800	824,221,800	82,422,180	82,422,180	82,422,180	82,422,180	82,422,180	82,422,180	329,688,720
		13		2	01,05	377,382,000	406,218,000	40,621,800	824,221,800	82,422,180	82,422,180	82,422,180	82,422,180	82,422,180	82,422,180	329,688,720
		14		2	01,05	381,118,000	410,240,000	41,024,000	832,382,0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332,952,800
		15		2	01,05	381,118,000	410,240,000	41,024,000	832,382,0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332,952,800
		16		2	01,05	381,118,000	410,240,000	41,024,000	832,382,0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83,238,200	332,952,800
		17		2	01,05	384,855,000	414,262,000	41,426,200	840,543,200	84,054,320	84,054,320	84,054,320	84,054,320	84,054,320	84,054,320	336,217,280
		18		2	01,05	384,855,000	414,262,000	41,426,200	840,543,200	84,054,320	84,054,320	84,054,320	84,054,320	84,054,320	84,054,320	336,217,280
		19		2	01,05	384,855,000	414,262,000	41,426,200	840,543,200	84,054,320	84,054,320	84,054,320	84,054,320	84,054,320	84,054,320	336,217,280
		20		2	01,05	388,591,000	418,284,000	41,828,400	848,703,400	84,870,340	84,870,340	84,870,340	84,870,340	84,870,340	84,870,340	339,481,360
		21		2	01,05	388,591,000	418,284,000	41,828,400	848,703,400	84,870,340	84,870,340	84,870,340	84,870,340	84,870,340	84,870,340	339,481,360
		22		2	01,05	388,591,000	418,284,000	41,828,400	848,703,400	84,870,340	84,870,340	84,870,340	84,870,340	84,870,340	84,870,340	339,481,360
		23		2	01,05	392,327,000	422,306,000	42,230,600	856,863,600	85,686,360	85,686,360	85,686,360	85,686,360	85,686,360	85,686,360	342,745,440

* 오피스텔 타입별, 층, 향, 구조 등에 따라 분양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동법시행령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분양호실의 20%를 분양신고일(2021.06.17, 광고일과 다름) 기준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에 우선 선정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 분양으로 청약)

• 단, 거주 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경기도 고양시 거주지역 당첨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검토 후 경기도 고양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사실이 취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신청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1.06.18)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동법상 외국인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전액을 자납 하여야 합니다.

• 1인당 최대 1개군까지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개군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합니다.

• 각 층, 호실은 한국부동산원(청약Home)을 통해 전산 추첨하여 결정되며(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음), 미 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

항 규정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개별호실별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1.06.23(수요일) 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 영업시간까지)	2021.06.28(월요일) 16:00 이후	2021.06.29(화요일) ~ 2021.06.30.(수요일) 10:00 ~ 16:0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군)별 무작위 결정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THE GL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94)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KEB하나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군/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 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군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KEB하나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KEB하나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본인도장(또는 서명)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 1통(청약신청인 명의)</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colspan="2">-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양식은 신청접수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및 도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KEB하나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사본 1통(청약신청 법인명의)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대리인도장 지참]</td></tr>
</table>

※ 창구접수는 대행은행인 KEB하나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모델하우스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동일인의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06.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등(초본)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접수 마감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됨.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군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1년 06월 28일(월요일)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선정
동.호실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군 내에서 타입·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1.06.29.(화요일) ~ 2021.06.30(수요일)	10:00 ~ 16:00	THE GL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94)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 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잔여 호실에 대하여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수협은행	49101147623369	(주)하나자산신탁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중도금/잔금		동호수별 가상계좌 생성(계약서 명시)		[예 : "501호" 당첨자 홍길동" → 501 홍길동]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수협은행 1010-2073-7526 (주)하나자산신탁)관리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공급계약 시 부여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분양광고상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는 호실별로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급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공급)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은행명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1통, 설계변경 동의용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2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1통, 설계변경 동의용 1통)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법인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1통(모델하우스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 2021.06.18.(금요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이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내용을 분양받는 자 전원에게 알림.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수의 분양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모델하우스,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최초 계약일 이후 미 계약 호실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제9-42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 할 수 없음.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름.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고지 예정.

• 대출금액 :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금액의 최대 50% 무이자 적용.(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그리고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조건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50%내에서 알선하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자납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시행위탁자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모델하우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수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 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1인 최대 건수 및 대출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납하여야 합니다.

Ⅳ 기타 계약자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용승인일 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부터 1년간을 말함)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8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예정일 : 2024년 05월 예정 • 입주예정일 : 2024년 06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행정명령,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주요 질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 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통지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음.)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사항

※ 본 사항은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글로벌덕은(주),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의 업무대행사 지엘덕은도시개발(주),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현대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수분양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글로벌덕은(주),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의 업무대행사 지엘덕은도시개발(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글로벌덕은(주),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의 업무대행사 지엘덕은도시개발(주)와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글로벌덕은(주),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의 업무대행사 지엘덕은도시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글로벌덕은(주),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의 업무대행사 지엘덕은도시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 글로벌덕은(주),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의 업무대행사 지엘덕은도시개발(주)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에게 있습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는 위 분양목적물의 대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대지로서 수분양자의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조성사업 준공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V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반 관련 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을 확인, 수인하고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실은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현휘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전자주소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유인물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의 명칭 및 동·호수의 표시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레벨은 건물 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입구 접근로에 계단, 경사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건축허가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관리사무실, 주차장, 엘리베이터, 부대시설, 단지조경 등) 및 대지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 오피스텔 부대시설(경비실, 생활폐기물보관소 등)은 제외.

• 모델하우스는 분양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므로 이에 대해 수분양자는 반드시 확인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 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9호, 2017.05.23.)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이용 계획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승강기 홀과 복도는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및 마감재의 변경, 주민공동시설의 추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분부터 위탁사는 계약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단, 계약자는 사업자등록 시 위탁사에게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한 미통보 및 통보지연, 사업자 미등록, 부가세 미신고 및 누락 등의 사유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계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덕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업무용지 내 오피스텔의 건축허용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불구하고 사무구획 별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 온돌, 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 설치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타입은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내 발생 유치원생, 초·중학생은지구 내 신설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배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오피스텔로부터 신설학교까지 주변 통학로정비와 보행안전 펜스, 도로유색포장, 고원식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시설물 등의 통학안전시설물 설치를 덕은지구 사업시행자(LH)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신축에 따라 유입되는 고등학생은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교육부의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학교 설립, 학급당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설 예정인 리버파크브릿지(보도육교)는 주관사 LH의 사정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 가능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합니다.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외 유의시설(난지물재생센터, 난지빗물펌프장, 향동천유수지, 군부대, 한국항공대, 마포구 청소차고지, 고물상, 묘지 등)에 대한 이전 등을 LH,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면적 관련 사항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 × 0.3025)

· 면적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동일 전용면적을 가진 단위호실 타입 간에도 주동구성에 따라 호실외벽 두께는 다를 수 있으며, 전체호실 벽체공용면적의 합계를 각 호실별 전용면적비로 균등 배분하였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해당 용도의 실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용도(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의 공동이용시설(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용역원실 등)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전체공용으로 하며, 유지관리 및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일 공간 내 장비배치 및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당 면적비율로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팬룸, MDF, 층구내통신실, 방재실, 관리사무실, 용역원실, 부대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복도, 계단, 로비, 벽체공유면적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원 관련 사항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기된 도로 등의 주변개발 조성계획[학교, 도로망, 철도(지하철) 등 각종시설]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과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오피스텔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모델하우스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및 CG(조감도, 투시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입면디자인, 조경, 색채, 몰딩, 창호,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옥탑장식물, 냉각탑, 외부 로고사인, 외벽마감, 바닥포장, 필로티, 상가천창,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 분양 오피스텔과 본 오피스텔을 비교하여 모델하우스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모델하우스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동일평형이나 모델하우스와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 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집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착공 후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지반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호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건축허가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고,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권은 층별, 동별, 실별로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에는 냉각탑이 설치되며, 소음, 진동 및 백연, 미관 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본 시공 시 29A~29E 타입은 중앙냉방 방식의 냉방전용 팬코일유니트가 실별로 기본제공되며, 37, 60 타입은 냉난방 겸용 팬코일유니트가 실별로 기본 제공 됩니다.

· 실별 팬코일유니트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천정 내외에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타입별 상세 위치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고효율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일부 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신탁계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당첨자 등 포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측벽디자인, 창호형태 및 색상, 상가 입면디자인 등), 오피스텔 단지명 사인물, 동현관, 난간의 디테일, DA(Dry Area)등 외부시설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주변여건에 따라 항공기 및 도로, 교통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공사로 인한 소음발생여부 등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배치 특성상 시각적 간섭, 소음, 바람, 일조권 간섭 등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내외 부 조경,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등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지역열원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또는 이전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해당법령에 따라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중과 또는 가산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입주 시, 주변 지역의 공사가 진행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추후 본 사업지 및 사업지 부근의 부지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제반 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호실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시에 당사 부지 인근의 점포주택 등의 공사 및 기반시설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및 공사자재 수송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는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시험, 추후 본 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내·외부 창호는 실별, 층별, 위치별로 개폐방향, 색상, 프레임 위치 등은 다르게 계획되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델하우스 내에 비치된 건축허가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시 성능 향상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 입면에는 실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오피스텔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승강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이용으로 인해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호실별 부대시설의 간섭위치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며, 단지 내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수경시설, 포장 등의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세부적인 위치와 형태, 재료는 향후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하신 후 청약 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부지 인근에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가 위치하며,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1층 지역에는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가로수, 수목식재, 휴게시설, 자전거 보관소, D/A 등이 설치됨으로 이에 대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목 및 가로수 식재지역에는 수목이 지상2층 이상으로 올라감으로 이를 감안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오피스텔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 후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 후 최대 15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 제연FAN / 정화조 / 정화조 배기탑 / 우수조 / 탈취기 / 송풍기 / 정화조 배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장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정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장비 등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모델하우스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 (일부타입미설치)

· 전용 37 / 60㎡ 타입에는 바닥 난방이 제공되지 않으며, FCU난방만 제공되며 수 분양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모델하우스 관련 사항

· 모델하우스는 29Am², 29Cm², 60m² 타입이 설치되고, 미설치된 29Bm², 29Dm², 29Em², 37m² 타입은 모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모델하우스 내에 비치된 건축허가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 등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각 실의 스프링클러 헤드, 급.배기구 위생도기, 수전, Accs류,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모델하우스 시설이며, 실 시공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환기구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수준으로 적용 됩니다.

· 실 내 통합 분전반 설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실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내 건립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 및 분양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미설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포장,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DA)등은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는 분양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평면, 시설물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전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조경도, 단지모형, 각 타입 별 단위실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건축허가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모델하우스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 및 가구 가전은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수준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위실 내 창호의 설치위치, 크기, 사양, 색상, 디자인, 제조사, 문열림 방향, 창호 손잡이 높이 및 형태,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배연창의 위치, 배연창 개폐기의 형태,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CG에 표현된 시설, 벽면녹화 등은 사업주체의 상환경 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디스플레이 예시로 사업주체의 계획에 의해 설치기간 형태/수량/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관련 사항

· 본 건물은 주변상가 및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하여 주말 교통 혼잡 및 소음과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바람세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에 연돌효과에 따른 부하로 인해 원활하지 않은 엘리베이터 문닫힘과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입점자, 외부인과 공용으로 사용 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또는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 계약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천장 구조물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빛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정원 인접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등)은 시공범위가 아니며, 향후 입주 시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공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오수스크린 및 쓰레기 집하장, 등으로 인해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시설 및 대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와 공동지분으로 하며 개별실 소유권과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오피스텔 부대시설 제외.

·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대지 내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실은 가로등, 옥탑 장식물의 경관 조명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주동 공용부 창호의 경우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시험, 추후 본 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디자인, 개폐방향, 개폐각도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상3층~지상11층 공용부 창호에 소방대 진입창이 설치되며, 창호의 분절 형태 및 개폐 크기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델하우스 내에 비치된 건축허가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완강기 설치 법규로 인하여, 지상3층~지상10층 오피스텔 공용복도 구간 벽면에 완강기를 각 층별 지그재그로 설치예정이며, 모델하우스 내에 비치된 건축허가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사 시 성능향상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옥탑 및 지하주차장 신축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여 구획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엘리베이터홀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보강은 제외합니다.

· 무늬코트 도장 마감인 경우, 도면 지정된 부위에 수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도료를 스프레이 도장합니다. (상도코팅은 수성으로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무광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건축허가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실 내·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주민공동시설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없고, 팬룸, D.A 및 냉각탑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대하여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 및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로비, 승강기 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를 4개소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해 장애인용 승강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 조망, 채광, 통풍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모델하우스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의 배치에 따라 인접동 및 인접실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고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계약실의 일조량은 주변 지형이나 수목의 성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조량에 대하여 확정적인 설명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특기시방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임한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 자재 제조사 시공 기준에 따릅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차량 진출입 동선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이용하도록 계획되어져 있으며 지하1층에 별도의 출입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이용 동선을 분리하였기에 차량동선의 혼잡 및 보안 등 이용 상의 불편 등이 야기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확인·수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판단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관리주체가 관리실(지하 환기 미실시)로 인하

여 발생되는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대지 주위로 도로(자유로 外)에 의한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빛공해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층 냉각탑 설치로 인해 인접세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조경(옥외휴게공간) 및 휴게실 설치에 따른 하부 호실은 우수처리 및 단열계획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 호실 천장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니, 필히 위치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 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기계전기설비 관련 사항

· 오피스텔 난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한 바닥 난방 방식입니다. (단, 고양덕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전용면적 30㎡이 넘는 37타입과 60타입은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은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을 공동 사용합니다.

· 계약 용량외에 입주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입주자가 공사해야 합니다.

· 단위실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 거실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주방에 렌지후드 환기덕트, 콘센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옥상에는 냉각탑, 근생시설 및 폐기물보관소용 배기휀, 근생시설용 주방배기 탈취 유닛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하부 호실에 소음, 냄새, 그을음,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관련 사항

·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부대시설은 관리단의 구성 이후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자체적인 비용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입주자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입주민들의 책임과 부담하에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

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은 실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시공될 것이며 이에 대해 추가설치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평면, 입면, 단면, 창호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 B동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커뮤니티 시설 등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를 위한 용도이며, 오피스텔 계약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위실 관련 사항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기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딤판 / 걸레받이, 욕실 비누턱 등에 사용된 E-Stone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무늬가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무늬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실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내부에 설치된 분전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선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각종 마감재, 단위실, 계단실등 "갑" 또는 "갑"이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합격한 제품을 승인하여 시공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을"이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불량이 발생한 경우 "갑"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창호의 설치위치, 크기, 사양(유리사양, 창틀디자인, 손잡이, 루버형태, 재질, 색상, 디자인) 제조사, 열림 방향은 시공 시 건축물의 성능 향상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열림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세대내 창호의 종류(커튼월, AL창호 등) 및 크기(형태 및 디자인 등)가 상이하므로,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타입별 배연창의 위치, 개폐기의 사양에 따른 크기,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배연창 개폐용 버튼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고, 버튼조작을 통해서만 개폐가 가능합니다. (안전을 위해 열림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가 설치되는 부위에 창대석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창대석의 높이, 두께, 크기, 색상,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일 및 인조대리석, 바닥재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차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외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의 내용은 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금속 손잡이류의 색상은 본 공사시 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장 나누기 및 점검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 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외벽측에는 환기등을 위한 외벽이 일부 오픈 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매립형난간, 프레임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공사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별 외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등에 의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
· 지상 3층에 있는 호실은 베란다 유무와 베란다 형태, 면적 등이 다르므로 모형 및 도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상 3층에 있는 베란다의 바닥마감, 칸막이의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3층 베란다타입 단위실은 주변 시설과의 시야 간섭으로 프라이버시등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3층 베란다타입 단위실은 외부 단위실간 칸막이가 설치되며, 외부 베란다에 면한 창호는 베란다로 나갈 수 있도록 도어형태의 창호가 설치되므로 계약 체결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상3층 베란다타입 단위실의 외벽, 측벽, 실간벽은 인접실의 형태, 외부마감 설치로 벽체 돌출 및 베란다 실사용 면적이 다소 감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3층 베란다타입 단위실의 바닥 마감, 난간의 설치위치 및 고정방법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3층 베란다타입 단위실의 난간의 경우 설치위치, 크기, 사양, 색상, 디자인, 제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3층 베란다타입 단위실의 경우 제공된 베란다 외 외부로 출입할 수 없으며,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하여 점용할 수 없으며,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지상3층의 베란다에 인접한 호실은 베란다를 통한 인접세대 침입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한 문틀의 폭 변경, 창호 및 각종 도어류의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도어 케이싱의 두께 및 형태, 시공 디테일 등은 본 공사시 건축물의 향상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 등 가변성으로 인하여 항목 및 아이템 실별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습도등 생활여건에 따라 창호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단위실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실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등을 입주 전에 입주자 개인의 기호에 맞게 변경 할 수 없으며, 내부시설물의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위실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실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모델하우스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현관바닥,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베란다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치수 및 내부 디자인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씽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수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천정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되며 일부 단위실 화장실에는 급배수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내부에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향후 건축물의 성능 향상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실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단위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 오피스텔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베란다는 건축법상 상부 지붕을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당할 수 있으니 계약시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우물천정은 천장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크기/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간(베란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차폐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에 설치되는 세대통합분전함의 위치는 모델하우스에서 도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여야하며, 설치 형태에 따라 도배 및 가구 등 주변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2항,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원)	비고
건축	(주)전인CM건축사사무소 (주)한원포럼건축사사무소	2,000,000,000	(VAT별도)
구조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계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위탁사	글로벌덕은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00, 216-2호(송정동, 로얄플라자)	134211-0202591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15층 1-2호(청진동)	317-23-01148
지엘덕은지주공동개발 업무대행사	지엘덕은도시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제15층 제1-3호(청진동, 타워8)	110111-6003521
시행수탁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110111-1714818
책임준공 시공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10111-0007909
분양대행사	글로벌알앤알 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00, 2층 217호(송정동, 로얄플라자)	131311-0129902
감리사	㈜전인씨엠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0 A동 17층(대치동, 미래에셋타워17층)	110111-1190688
	㈜한원포럼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 7층(가락동, 전기회관)	110111-1419640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장으로 분양대금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가 동일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하나자산신탁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07호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용도 · 규모
 ①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11, 12) 일원
 ② 지목 : 대
 ③ 용도 : 지식산업센터(공장),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④ 규모 : 지하6층 ~ 지상23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은도시개발), 완충녹지(저촉)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 등기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모델하우스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94번지
- 분양안내 : 1588-0677

■ 사이버 분양홍보관(홈페이지) 및 위치

- 홈페이지 : http://지엘메트로시티.com/thegl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모델하우스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모델하우스 에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